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03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제1항 중 "제9조의3제2항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3제2항"으로, "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"를 "필요한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4(등록취소심의위원회) ①	제9조의4(등록취소심의위원회) ①
<u>제9조의3제2항</u> 에 따른 사업정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
지의 명령, 등록취소심판의 청	3제2항
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	
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	
인 심의를 위하여 <u>문화체육관광</u>	<u>필요한 경우</u>
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	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・
위원회를 둔다.	<u>운영할 수 있다</u> .
<u><신 설></u>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
	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
	<u>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</u>
	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해산
	<u>할 수 있다.</u>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